

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60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4. 2. 27.

제안자 : 주택공간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명시하고, 사업 대상지 중 민간이 제안가능한 용도지역을 한정하며, 사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추가 신설하는 등,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‘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역’을 구체적으로 세분하여 명시함(안 제2조제3호).
- 사업대상지 중 민간이 제안가능한 용도지역을 한정하고(안 제5조제1항),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를 안 제2조제3호 각 목의 지역으로 함(안 제5조제2항).
- ‘허가권자’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(안 제7조제1항).
- 사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추가 신설함(안 제11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).

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안 제1조 중 “세대의”를 “세대별”로 한다.

안 제2조제1호 중 ““임대형기숙사”이란”을 ““임대형기숙사”란”으로 하고, 같
은 조 제2호 중 “이 조례 제2조제1호”를 “제1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를 다
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말하고”를 “말하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
호 중 “제2조제1호”를 “제1호”로, “같은 조 제2호”를 “제2호”로 하고, 같은 조
제6호 중 “한다)시장”을 “한다)”로 한다.

3. “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역(이하 ‘사업대상지’라 한다)”이란 지하
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가. “역세권”이란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
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
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다음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
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

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1)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
2)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나. “간선도로변”이란 「도로법」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·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다. “의료시설 중심지역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안 제3조 중 “민간운영 임대형기숙사 건립”을 “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”으로 한다.

안 제4조 중 “적용함”을 “추진함”으로 한다.

안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역세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을 “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① 임대형기숙사의 건설·공급을 위해 민간이 제안가능한 사업대상지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대상지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1.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. 단,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한다.
2. 준공업지역
3.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

안 제7조제1항 중 “허가권자”를 “허가권자(제6조제1호에 따른 건축의 허가권자 또는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 중 “제7조”를 “제7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 중 “제출하는”을 “제출 시”로 한다.

안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따른”을 “따라”로, “위하여”를 “갓추기 위해,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주택임대관리업:”을 “주택임대관리업”으로 한다.

안 제11조제2항제4호 중 “산정”을 “산정 및 부과·징수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모집·선정 및 명도·퇴거 지원
6.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
7.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, 주택,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
8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, 투자유치, 자금 등 지원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대형기숙사 건설·공급을 지원하여 다양한 <u>세대의</u>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세대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임대형기숙사”이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.	1. “임대형기숙사”란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임대사업자”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<u>이 조례 제2조제1호</u> 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	2. ----- <u>제1호</u> ----- ----- -----.
3. “역세권등”이란 법 제2조제1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50미터이며, 같은 호 마목에서	3. “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 지역(이하 ‘사업대상지’라 한다)”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

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.

중교통과 의료시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가. “역세권”이란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1)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
2)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“간선도로변”이란 「도로

4. “촉진지구”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,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
5. “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설·공급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및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
6. “공유공간”이란 국토교통부장

법」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·고시한 특별시도 중 구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다. “의료시설 중심지역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4. -----

----- 말하며 -----

-----.
5. -----
제1호 -----
----- 제2호 -----

-----.
6. -----

관이 고시하는 「기숙사 건축기준」(이하 “기숙사 건축기준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유공간으로서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민간운영 임대형기숙사 건립을 위한 지원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사업대상지) ①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(이하 “사업대상지”라 한다)는 임대형기숙사를 건설·공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이 제안하는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2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형기숙사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한한다.

----- 한다)-----
-----.

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-----
-----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
----- 추진함-----
-----.

제5조(사업대상지) ① 임대형기숙사의 건설·공급을 위해 민간이 제안가능한 사업대상지는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대상지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1.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. 단,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한다.

②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는 역세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니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

1.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

2. 「도로법」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·고시한 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

3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대상부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

③ (생 략)

제7조(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) ①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에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인·허가 관련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2. 준공업지역

3.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

② -----
-----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-----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③ (제정안과 같음)

제7조(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) ① -----

----- 허가권자
(제6조제1호에 따른 건축의 허가권자 또는 같은 조제2호에 따

② ~ ④ (생략)

제8조(사업계획의 결정절차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하며,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(이하 “통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9조(임차인 자격 등) ① (생략)

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허가권자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10조(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) 임

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---.

② ~ ④ (제정안과 같음)

제8조(사업계획의 결정절차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----- 제7조제2항-----

-----.

③ (제정안과 같음)

제9조(임차인 자격 등) 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제출 시 -----
-----.

③·④ (제정안과 같음)

제10조(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) --

대사업자는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제2호차목에 따른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.

1. 100실 이상: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:

2. (생략)

제11조(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임대료·관리비 산정,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지원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----- 따라 -----

갖추기 위해,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주택임대관리업

2. (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)

① (제정안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제정안과 같음)

4. ----- 산정 및 부과·징수-----

5.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모집·선정 및 명도·퇴거 지원

6.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

7.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, 주택,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

8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, 투자유치, 자금 등

5. (생 략)

지원

9. (제정안 제5호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임대형기숙사 건설·공급을 지원하여 다양한 세대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임대형기숙사”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.
2. “임대사업자”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립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대상지역(이하 ‘사업대상지’라 한다)”이란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과 의료시설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지역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

가. “역세권”이란 지하철, 국철 및 경전철 등의 역(승강장 기준으로 개통
이 예정된 역을 포함한다)의 각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의
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서울특별시(이하 ‘시장’이라 한다)은 다음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
한 조례」 제19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의
심의를 거쳐 역의 각 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의
토지를 사업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다.

1) 역의 승강장 위치가 도로의 선형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

2) 주변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나. “간선도로변”이란 「도로법」 제1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·고시한
특별시도 중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
지역을 말하며,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다. “의료시설 중심지역”이란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대상부
지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.

4. “촉진지구”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
구를 말하며, 법 제2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천제
곱미터 이상으로 한다

5. “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”이란 제1호에 따른 임대형기숙사를 건설·공급하
기 위하여 제2호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건축
허가 등을 받아 건축물의 건축, 대수선,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하는 것을
말한다.

6. “공유공간”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「기숙사 건축기준」(이하

“기숙사 건축기준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공유공간으로서 이 조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위한 지원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정 등

제5조(사업대상지) ① 임대형기숙사의 건설·공급을 위해 민간이 제안가능한 사업대상지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대상지로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1. 주거지역 중 시장이 정하는 지역. 단, 전용주거지역은 제외한다.
2. 준공업지역
3. 일반 및 근린상업지역

②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대상지는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.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.

1. 서울특별시 정책상 보전 및 전문 기능이 필요한 지역

2. 양호한 저층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역사, 문화, 옛 정취 보존 등 입지 특성화 지역 등
3. 다른 법령에 의하여 추진 중이거나 계획 수립 완료된 지역 등

제6조(사업유형) 임대형기숙사의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.

1.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
2. 「주택법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

제7조(사업계획의 수립·제출) ①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사업대상지에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에 따른 인·허가 관련 서류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허가권자(제6조제1호에 따른 건축의 허가권자 또는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임대사업자가 축진지구에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법 제22조에 따른 축진지구 지정 제안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신청 관련 서류
2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관련 서류
3. 그 밖에 임대형기숙사의 건설·공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유공간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업대상지에 따른 입주 수요 및 특성
2.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효율적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그 밖에 공유공간의 배치,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
④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. 다만, 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.

제8조(사업계획의 결정절차) ①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
2. 제7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,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(이하 “촉진지구지정등”이라 한다)
3. 제7조제3항에 따른 공유공간 계획에 대하여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

②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사업계획을 접수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할 자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야 하며, 촉진지

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9조에서 제24조 까지에 따라 설치·운영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(이하 “통합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.

- 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촉진지구지정등을 한 때에는 서울시보에 고시 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장 임대형기숙사의 공급·관리 등

제9조(임차인 자격 등) ①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, 최초 임대료(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포함한다), 임대료 상승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다.

-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제출 시 허가권자 및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별표 2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시장은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에 따른 청년안심 운영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할 수 있으며,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회계사, 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다.

- ④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 1에 따른 특별공급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.

제10조(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) 임대사업자는 기숙사 건축기준 제2조제2호 차목에 따라 건축물 내 임대형기숙사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관리주체에 의한 관리운영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.

1. 100실 이상: 법 제2조제10호가목에 따른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
2. 300실 이상: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

제11조(사업지원기관의 지정운영) ① 시장은 임대형기숙사의 원활한 건설·공급을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임대형기숙사 사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1. 사업(예정) 대상지에 대한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 총괄 지원
2.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영향 및 파급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등
3.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주거지원대상자의 모집·선정 및 명도·퇴거 지원
4. 임대료·관리비 산정 및 부과·징수, 주거비지원 등의 업무지원
5.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모집·선정 및 명도·퇴거 지원
6. 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의 자문
7. 공공기여에 따른 토지, 주택, 기여금 관리의 사무위임
8.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, 투자유치, 자금 등 지원
9.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

제12조(운영기준 등) 시장은 임대형기숙사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용도지역 변경, 용적률 완화, 공공기여율, 건축계획 등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